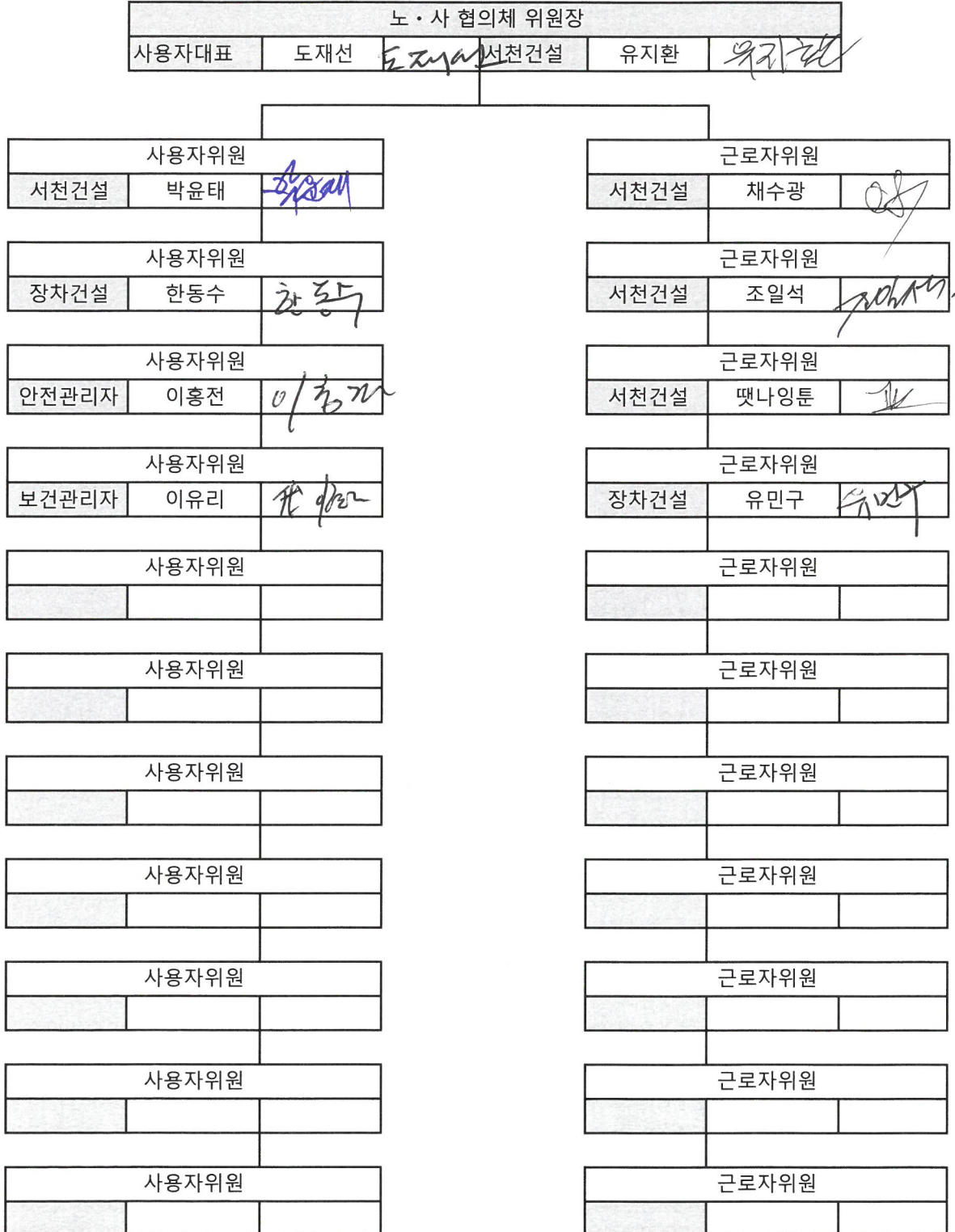


2023년 9월 노·사 협의체 회의록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의 4항)

결 재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이흥전	유지환	[Handwritten Signature]

현장명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2공구)	개최일	2023년 9월 1일 금요일
회의장소	회의실	참석인원	10명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93조

구성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④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③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 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심의·의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023년 9월 1일 금요일

노·사 협의체 회의록(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의 4항)

■ 심의 사항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건설장비 작업전 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건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사항 없음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23년 교육계획 작성 및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중
- 신규채용자 교육 실시시간 오전 8시까지, 오후 2시까지
- 1년 이상 근로자 추가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측정주기, 6개월▶3개월 변경 실시중, 신규 공종 발생시 작업환경측정 실시의 건 ✓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신규채용자 혈압 관리,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 보호근로자 관리의 건 ✓

⑥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당 현장의 아차사고 사례 공유 / 대책 수립에 관한 건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매월 정기 점검 및 신규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건
- 사용금지 스티커 발부 조치기한내 지적사항 미조치시 사용중지 및 반출

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작업장 내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병 유소견자,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관리 및 이행에 관한 건 ✓

■ 의결 사항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에 맞는 작업계획서 수립
→ 당 현장 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반영 예정
- 건설기계 일일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자 및 관리감독자 확인관리 실시 → 매주 화 제출 ^{*} 必

< 찬성 10, 반대 0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사항 없음
-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위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요청 사항 없음
(게시 장소 : 안전교육장, 근로자휴게실, 근로자식당, 모바일(현장통) 전달사항)

< 찬성 10, 반대 0 >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연간 교육 계획에 따라 정기, 특별, 관리감독자교육 등 실시
- 신규채용자 교육 진행시 교육 시작 시간 준수 (교육 실시시간 1차:오전 8시 2차:오후 2시까지)
- 1년 이상 근로자 추가 교육 실시 중 →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4시간씩 4개월 진행예정) ✓
- 관리감독자 교육 연16H - 8시간(비대면 교육) 완료, 잔여 8시간 진행중(7~9월 집체교육 실시 중)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

< 찬성 10, 반대 0 >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안법상 측정 주기는 6개월/1회 ▶ 당 현장 특성상 3개월/1회로 시행 중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통하여 개선활동 실시)
-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위원의 추가 측정 요구 시 협의 후 진행 예정 ✓
- 23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실시 완료(수직구, 시점 작업환경측정 실시 완료) ✓
- 신규 공중(종점부) 추가 작업환경 측정 실시 ✓
게시 장소 : 안전교육장, 근로자휴게실, 근로자식당, 모바일(현장통) 전달사항 전파)
- 시점, 수직구 스마트 가스측정기기 설치 운영 중(스마트가스스니퍼 어플 사용)

< 찬성 10, 반대 0 >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고혈압(150이상), 고령근로자(만 65세 이상)- 의사소견서 및 근로자 투입승인 요청서 제출 후 작업 투입 ✓
- 신규근로자 작업 투입 전 배치전 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제출 必 ✓
- 보호근로자(고령자, 개인지병 등) 및 직업병 요관찰자(유소견자) 는 수시 상담 진행 중 ✓

< 찬성 10, 반대 0 >

⑥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
- 비상사태 대비 훈련에 따른 상황 전파 및 이행(현장통 등을 이용하여 전파)
- 23년 7월 수직구 낙하물 비상사태 훈련 실시 완료
- 23년 9월 중 감전재해 관련 비상사태 대비 훈련 실시 예정

< 찬성 10, 반대 0 >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 사례 교육 실시
- 동일 공중 등 재해 사례 및 개선대책 전파 교육
- 당 현장과 관계된 중대재해 사고사례 현장 게시(시점 1개소, 수직구 1개소)

< 찬성 10, 반대 0 >

■ 의결 사항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관련 규정 미준수시 사용금지 스티커 부착 ✓
 - ▶ 안전점검팀 조치 완료 확인 후 작업재개, ~
- 사용금지 스티커 임의 제거 및 임의 사용시 해당 공중 작업 중지 후 특별교육 실시 예정 ✓
- 공도구 및 슬링벨트, 와이어로프 등 반입 전 점검 / 정기 점검(월 1회) / 수시 점검 실시 중 ✓
- 임의 반입 사용시 즉시 사용 중지 / 점검 완료(점검 완료 스티커) 된 기계·기구에 한하여 사용 ✓
- 정기 점검 후 승인필 스티커 훼손 금지, 사용중 스티커 훼손 시 재 부착 요청 ✓

< 찬성 10, 반대 0 >

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병 유소견자,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매달 건강상담 실시 ✓
- 직업병 유소견자에 따른 청력보존프로그램 및 호흡기보호프로그램 실시 ✓
- TBM 등을 이용한 기저질환자 및 고령자 건강상태 확인 철저

< 찬성 10, 반대 0 >

■ 협의 사항

①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분기별 비상사태 훈련 시행중(23년 7월 수직구 낙하물 비상사태 훈련 실시完, 9월 중 감전재해 예방 비상사태 훈련 실시 예정), 각 각 부여된 임무 내용 숙지
- 온수터널 시점부 양방향 피난유도선(LED) 설치 대피 동선 시야 확보 양호
- 수직구 안전계단 설치 완료 대피 동선 확보 양호

②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오전작업 시작시간 오전 6시 45분 시작 17시 30분 작업종료
수직구 오전작업 시작시간 오전 6시 50분 시작 16시 30분 작업종료
중정부 오전작업 시작시간 오전 7시 00분 시작 16시 작업종료
오후작업 시작시간 오후 6시 시작 오전 6시 작업종료(오후작업 근로자 작업 시작전 TBM 별도 실시, 월요일 주간작업팀 장약작업전 별도 TBM 실시▶사진 전송 必)
- 당 현장 옥외작업 및 휴대전화 불가 지역 없음
(터널 근로자 대기실 중계기(SK, KT) 설치完, 터널 내부 양방향 중계기(SK, KT) 설치完)
- 발파시 근로자 대피 완료 여부확인을 위한 무전기 사용 철저

③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모바일 안전관리 시스템 현장통 운영 철저(예 : 위험치위취, 위급사이렌, 위험성평가 등)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9TO5 일일공정 안전회의, 1-3-5안전문화 활동 실시 철저 전파
- 건설장비를 이용한 작업시 근로자 통제 및 작업계획 수립, 준수 철저
→ 실 투입 2일전 까지 각종 작업계획서 제출 必

④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월 1회 위험성평가(한양 위험성평가 HRA) 실시 변경, 매월 22일까지 제출
- 신규 공중 및 단기간혈적 작업 발생 시 사전위험성평가 실시 必
위험성평가 미실시 작업은 작업 실시 불가
- 신규 공중(중점부-장차건설) 최초 투입시 위험성평가 실시 완료
- 위험성평가표 안전교육장, 근로자휴게실, 근로자 식당 및 모바일(현장통) 등 게시 전파 중
- 모바일 현장통 운영중(전달사항, 위험성평가 등 근로자가 참여 적극 유도)

⑤ 기타 사항

-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의식 우수근로자 포상품 지급 실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수직구 야간 작업근로자를 위한 터널대기실 설치
- 중점부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및 샤워실 컨테이너 반입 예정

■ 건의 사항(근로자의 의견청취)

건의자	건의사항	처리방법
셋나임든	음식-간식 제공을 요함	안전교육 행사 시 음료(간식) 제공 예정
조말석	수직구 작업장 화장실 반입 필요. (야간 작업 시 음용 화장실 폐쇄)	중점 반입 예정 화장실 컨테이너 우선 수직구 반입 후 추가 반입계획 수립

사진대지



날짜

2023년 9월 1일 금요일

비고

내용

노·사 협의체 회의



날짜

2023년 9월 1일 금요일

비고

내용

노·사 협의체 회의

(주) 한양 귀중

노·사협의체 사업주 대리인 선임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4조)

회사명 : 장차건설(주)

공종 :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사업주 : 이 선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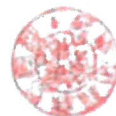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2공구) 현장 노·사협의체 사업주 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 아 래 -

구분	성명	직급 및 직책	생년월일	비고
사업주	이 선 창	대표이사	120-81-91050	
사업주대리인 (현장소장)	한 동 수	현장소장	1980.06.21	

2023년 09월 01 일

장차건설(주) 대표이사 이 선 창



근로자 위원 위촉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4조)

소 속 : 장차건설㈜

직 위 : 부장

성 명 : 유민구

귀 하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2공구) 현장
노·사 협의체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 년 09 월 01 일

노·사 협의체 근로자 대표

유 지 환

(서명)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2공구)